

제2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4. 10.

임실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14.12.31.)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 변경된 재산세 경감율 적용(안 제3조)
- 나.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 변경된 재산세 경감율 적용(안 제4조)
- 다. 현행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제12조, 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55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협의 :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2015.03.03. ~ 2015.03.22.)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 5).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검토의견서 붙임)
  - 6).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현재 「의료법」에 따른”을 “현재”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로 한다.

제4조 중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과 또는 감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u>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u>현재</u> -----                      -----                      --- <u>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u>-----                      --.</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u>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u>」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u>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u></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 <u>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p>



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  
-----.

##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재정수반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작성자

- 재무과장 박 상 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12		
정책명	임실군 군세 감면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명	라경채	전화번호 063-640-218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3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재무과)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3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주민복지과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재무과장 귀하</p>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하여 경감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1.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날 10일 이내
4. 삭제<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업(이하“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업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